

# 국내 석유류 가격체계 조정과 경쟁촉진대책

- 동력자원부 -

## 1. 국제석유시장 동향

- 90. 8월 걸프사태 발발 이후 30\$/B 이상으로 상승하였던 국제원유가가 91. 2月 이후에는 16 - 17 \$/B에서 안정세를 유지
  - 지난 6. 4일 OPEC총회의 시장 안정화 구도로 3/4분기에도 현 국제유가 수준이 계속 유지될 전망
  - 성수기인 4/4분기 이후에는 현 국제원유 시장에 돌발적인 변화가 없는한 현재보다 1-2\$/B이 높은 17-19\$/B 수준으로 소폭 상승 예상
- 중장기적으로 세계 석유소비는 꾸준히 증가하는데 비해 蘇聯 등 非OPEC 국가의 생산능력 저하로 OPEC 국가의 결속력 여하에 따라 90년대 중반에는 25\$/B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국제 석유시장 추이》

(단위 : \$/B)

	1990 平均	1991. 3	1991. 4	1991. 5	1991. 6. 21
두바이	20.25	14.84	15.23	15.92	15.44
오만	20.77	15.39	15.78	16.47	15.99
브렌트	23.48	19.04	19.00	19.20	18.43
W.T.I	24.36	19.89	20.70	21.24	20.15
OPEC평균	21.23	16.34	16.41	16.90	-
국내도입가격	19.99	16.82	16.42	16.00	-

\* '91. 1~5月 평균도입가격 : 19.82\$/B

## 2. 여건변화와 주요고려사항

### (1) 석유소비

《석유소비 추이》

(단위 : %)

	1988	1989	1990	1991 (展望)
석유소비증가율	19.0	14.6	24.1	17.4
(휘 발 유)	(31.1)	(34.7)	(29.5)	(26.7)
(등 유)	(22.5)	(44.0)	(73.4)	(25.2)

- 석유소비의 급속한 증가는 에너지의 석유의존도를 심화시켜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 석유의존도 : ('89) 49.6% → ('90) 53.6%
  - 석유도입액 : ('89) 56.9억\$ → ('90) 89.7억\$ (總 수입액의 12.8%)  
(증가율) (27.5%) (57.7%)
- (2) 대외경제개방에 따른 경쟁체제로의 점진적 전환
  - UR서비스 협상등 여건변화로 대외개방이 불가피
  -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석유산업 규제완화 및 가격 자유화 추진
- (3) 석유사업기금 운용
  - 원유가격의 계절적 변동을 감안할때 최소한의 유가 완충기능 필요
  - 걸프사태 기간중 국내유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손실보전금중 미지급액에 대한 처리가 시급
    - 총 11,368억원중 '91. 7月 이후 미보전금(推定) : 1,932억원
- (4) 석유제품 제조원가의 상승
  - 환율상승(720→730원/\$)에 따른 원유도입 비용 부담 증가
  - 상압증류시설, 탈황 및 분해시설 신·증설등에 따른 정제비용의 상승

### 3. 국내 석유류 가격체계 조정과 경쟁촉진 대책

#### (1) 국내 석유류가격 체계 조정

##### 1) 조정원칙

- 물가안정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시책을 뒷받침
- 소비성 유종에 대해서는 현 소비자가격을 유지하여 소비급증을 억제
- 유종간 국내가격 구조를 국제수준으로 접근시켜 유가 자유화에 대비

##### 2) 조정재원

- 기준원유가 조정 : 19.40\$/B(현재) → 17.70\$/B(수정)
  - 유가관리 여건변화  $\Delta 0.73\$/B$   
(환율상승, 정제비 현실화)
  - 유가구조 조정  $\Delta 0.97\$/B$

##### 3) 조정내역

	稅前 공장도 가격(원/ℓ)			소비자가격(원/ℓ)			비 고
	현 행	조 정	인 하 율	현 행	조 정	인 하 율	
보통 휘발유 (특소세율)	213.74 (85%)	179.73 (120%)	△15.9%	477	477	-	소비억제, 특소세인상
무연 휘발유 (특소세율)	227.19 (70%)	193.11 (100%)	△15.0%	477	477	-	
등 유	192.47	172.47	△10.4%	238	216	△9.2%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제고
저유황 B-C	79.99	75.58	△ 5.5%	97.09	92.24	△5.0%	
저유황 B-C	69.67	65.26	△ 6.3%	84.81	79.96	△5.7%	

\* 휘발유는 소비억제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특소세율을 인상하여 소비자가격 현 수준 유지

\* 휘발유 특소세액 : 7,504억원 → 9,064억원 (+1,560억원)

#### 4) 시행시기 : 1991. 7. 1부터

- 5) 불가인하 기대효과
  - └ 도매 물가지수 : 0.203%P 인하
  - └ 소비자 물가지수 : 0.051%P 인하

(2) 석유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유가 자유화

- 경쟁여건이 조성된 휘발유, 등유(전체수요의 15%)는 '91. 8월중 자유화
  - 경유, B-C유 등 잔여유종은 국내외 경쟁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자유화 추진
- 자유화에 따른 보완조치
  - 가격 자유와 효과가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 병행(주유소 거리제한 완화, 3.14 조정명령 해제, 자유화 유종의 수출입 자유화)
  - 자유화된 석유제품 가격의 소비자에 대한 계시제도 시행
  - 행정지도 강화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으로 가격의 폭등·폭락 방지

(3) 기타조치

- 겔프사태 기간중 발생한 손실보전 미지급금의 처리
  - '91. 7월 이후 미지급금 1,932億원(추정)중 1,000億원은 追更에 反映
  - 나머지 미지급금은 기금징수분으로 상계처리

토막상식

직장인 에티켓

◇시계와의 싸움

직장생활이 시작된 이후로부터는「시계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철저히 계산된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 즉「제자리에 앉을 때는 누구보다 먼저, 제자리를 뜰 때는 누구보다 늦게」가 왕도이다.

예를 들어 아침출근시간·점심시간후의 일과시작때는 일찍, 점심식사시간이나 퇴근할 때는 가급적이면 선배직원이나 상사보다 늦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의다. 그의 일과중 자리를 뜰 때도 주의해야 한다.

◇중간보고 필요

업무상 외출을 했다거나 윗사람의 심부름을 갔을 경우에 윗사람이 궁금해 할 것을 생각해서 그때그때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중간보고의 내용은 ▲장거리인 경우 무사히 도착했다는 내용 ▲긴급한 일인데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진척도에 대한 중간보고 ▲결과에 대한 보고와 출발시간 등이다.

◇사적인 일로 외출할 때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사로운 일 때문에 외출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엔 좀 일찍 윗사람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락을 얻고 외출할 때에는 윗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시간은 엄수해야 한다. 가급적 약속시간보다 빨리 귀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럴 경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요령이라 하겠다.

◇잠시 자리를 비울 경우

간단한 용무로 인하여 자리를 뜰 경우에는 옆좌석의 동료나 선배사원에게 행선지와 목적 등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놓는다.

상사로부터 긴급한 지시사항이 있거나 급한 연락사항을 대비하여 항상 주위직원에게 행선지를 알려 주는 것이 좋다.

#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동력 자원부 -

**동력자원부**는 지난 7월 4일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의 취지는 석유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석유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제도를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특징을 보면 첫째 유가자유화 기반의 조기정착과 석유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 석유판매업 허가기준중 시도지사의 별도 허가 기준 설정 권한을 삭제하여 주유소간 거리제한 등 경쟁제한적 요소를 폐지하고

- 가격이 자유화된 유종에 대하여 수출입을 자유화하되 석유수출입업자로 하여금 석유저장시설을 보유토록하여 석유수요의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 석유정제시설의 증설허가제를 상압증유시설이외의 시설, 예를 들어 접촉개질시설, LPG분해시설, 탈황시설등 주요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하여 석유정제 시설에 대한 허가제도를 대폭 완화하였다.

둘째 민간비축제도의 도입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정제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게 전년도 판매량 또는 수입량의 30일분의 범위안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량의 석유를 연차적으로 비축토록 하며

셋째 정부권한의 민간위탁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입 승인권한과 석유정제업 신고 수리권한을 석유협회에 위탁하고, 운할유 및 운할기유 수출입 승인 권한과 운할유 정제업의 신고 수리권한을 운할유협회에 위탁했다.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안(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중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주요골자

1. 현재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정제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상압증유시설이외의 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하여 석유정제시설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 투자 촉진을 유도함(안 제7조)
2. 석유수입 신고요건으로 석유저장시설을 보유(임차포함)토록 하여 석유정제업자와 균형을 도모하고 석유시장개방에 따라 우려되는 석유수입업자의 난립을 방지함(案 第8條의2)
3. 석유판매업 허가시 시·도지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체허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삭제하여 석유판매업의 자율화를 도모함(案 第9條)
4. 월동기 민생유류의 수송차질을 예방하고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점의 저장기준 및 수송장비 보유기준을 상향 조정함(案 第9條 별표1)
5. 민간비축제도의 도입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정제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게 전년도 판매량 또는 수입량의 30일분의 범위안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량의 석유를 비축토록 하고, 동력자원부장관은 여건 변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案 第11條의 3)
6. 석유사업기금의 정부관리 기금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사무를 한국석유개발공사 사장에게 위탁함(案 第12條)
7. 석유화학원료용 나프타에 대한 석유사업기금 징수유예제도의 신설등 석유사업기금 징수제도를 일부 보완하여 원활한 운용을 도모함(案 第15條의2)
8. 정부권한의 민간위탁 확대를 위하여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입 승인권한과 석유정제업 신고수리권한을 석유협회에 위탁하고, 운할유 및 운할기유 수출입 승인 권한과 운할유 정제업의 신고수리권한은 운할유협회에 위탁함(案 第25條) ♣

# LPG용기 보증금제도 시행

- 동력자원부 -

**동력자원부**는 LPG 소비자보호 및 가스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용기보증금제도(일명 용기소유관리 일원화제도)를 7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하였다.

용기보증금제이란 LPG용기의 소유와 관리를 충전사업자가 전담하고 소비자는 일정보증금을 예치한 후 용기에 충전된 가스를 공급받는 제도로서 용기를 소유한 기존 소비자들은 보증금을 예치하는 대신 용기 소유권을 충전사업자에게 이전하며, LPG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 충전사업자 발행 보증금증서 및 용기를 반납하고 보증금을 환급받도록 되어 있다.

이제도는 그동안 관련업계에서 시행상 필요한 계약체결은 완료하였으나 용기 매매차익향유불가, 관리비용의 증가, 거래관행에 큰 변화 초래등을 이유로 부족한 유통마진을 먼저 현실화 한후에 실시할 것을 주장하여 사실상 시행이 되지 못하다가 지난 5월 판매소 마진의 일부 현실화를 계기로 급변 동력자원부에서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그 시행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 시행지침에 따르면 신규수요 용기는 최근의 실제 용기가격을 반영한 보증금예치 및 증서 발행으로 공급하고, 기존 유통용기는 보증금증서(보증금: 17천원/20kg용기, 40천원/50kg용기)를 개체되는

용기부터 점차 발행해 나가도록 하였는데, 이는 기존 유통용기수의 과다(약 1,200만개)로 보증금증서의 일제발행은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고, 충전사업자의 자산관리상 많은 문제가 예상되어 점진적으로 용기보증금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용기보증금제도의 정착이전에 보증금증서가 발행되지 못한 기존 유통용기에 대해서도 충전사업자가 용기 관리를 전담하고, 미사용시 기존 유통용기의 보증금을 적용매입케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다.

한편 동력자원부는 각 시·도의 용기보증금제도 추진실적 보고를 토대로 미추진업소들에 대하여는 행정처분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 LPG용기 보증금제이란

용기보증금제이란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LPG를 사용토록 하기 위해 용기의 소유와 관리를 충전사업자가 전담케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용기 보증금을 충전사업자에게 예치(기존소비자는 용기 소유권 이전)한 후 보증금 증서 수령과 함께 용기를 빌려 사용하고, 이사를 가거나 도시가스 사용등으로 용기를 반납할 경우에는 예치한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이다.

〈용기보증금〉

기존유통용기    신규수요용기

20kg용량 용기 : 17,000원    실제용기가격수준  
(일반가정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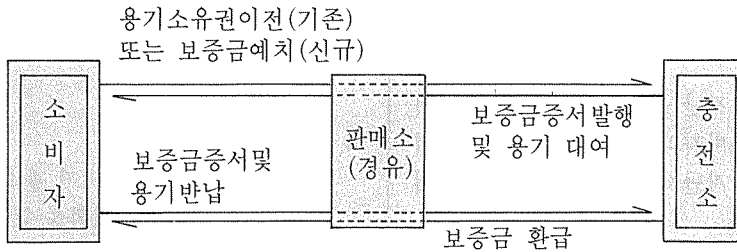
50kg용량 용기 : 40,000원    "

※보증금증서가 발행되기 이전의 기존유통용기는 미사용시 위 보증금을 적용, 매입한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점〉

- 용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 용기를 안쓰게 되었을때 높은금액(보증금)을 돌려 받는다.
- 책임있는 용기 관리로 안전하고 공급자와의 마찰없이 사용 할 수 있다.
- 이사할때 용기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설 명 도



※이사를 가고오는 소비자들간에는 가급적 보증금증서 및 용기를 양도·양수 하는 것이 편리하다.

용기 보증금제도 시행지침

1. 목 적

가스안전확보 및 소비자보호를 기하고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용기소유관리 일원화 제도(용기보증금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지침

기존 유통용기에 대한 용기보증금 증서의 일제 발행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곤란하므로 신규 수요 및 개체용기부터 용기보증금 증서를 발행하여 점진적으로 용기보증금 제도를 정착시켜 나간다.

- (1) 유통용기의 개체 및 관리(재검토등) 업무를 충전사업자가 전담한다.
- (2) 신규 수요용기는 용기보증금을 예치케 한 후 용기보증금 증서를 발행(발행충전소명 외에 보증기관으로 한국엘피가스공업협회 병기)하여 공급한다.
- (3) 신규수요 용기의 용기보증금은 우선 최근의

실제 용기거래 가격을 감안, 한국엘피가스공업협회가 한국LPG용기공업협동조합과 협의하여 정하고, '91. 9월까지 관련업체와 소비자단체간에 협의를 통하여 연간기준의 적정 수준으로 다시 정하되, 실제 용기거래가격이 10%이상 증감 변동시에는 1년단위로 제 협의의 조정토록 한다.

- (4) 기존유통용기는 용기보증금 증서를 개체용기부터 점차 발행해 나가며, 동 용기보증금은 '87. 2월 관련업체와 소비자단체간에 합의된 기존용기보증금(20kg용기-17천원/개, 50kg용기-40천원/개)으로 한다.
- (5) 용기보증금제도 추진에 있어서 관련업계간의 역할분담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충전소 : 용기보증금 증서발행 및 관리-미사용용기 회수 및용기보증금 환급
  - 판매소 : 용기보증금 증서 발행업무 협조(소비자명단 제출등), 충전소와 계약에 의한 미사용용기 회수등 충전소 위탁업무
- (6) 충전소 위탁업무에 대한 판매소의 수수료는 거래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 (7) 소비자가 용기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게되는 경우 용기보증금 증서가 없는 기존 유통용기는 (4)항의 기존 용기보증금을 적용, 매입하고, 용기보증금 증서가 있는 용기는 同 증서 액면가액을 환급한다.
- (8) 판매사업자는 동지침 시행과 동시에 자체소유 용기수량을 거래충전소에 통보하고, 충전사업자는 판매소가 폐업하는 경우 판매소 소유로 확인되는 용기에 대하여 용기보증금 증서가 없는 기존 유통용기와 같은 방법으로 매입 한다.
- (9) 충전기한이 지난 불법용기는 매입대상에서 제외하되 소비자의 장기사용시를 감안하여 충전기한이 지난지 3개월이하의 용기는 매입한다.
- (10) 용기보증금은 용기 및 용기보증금증서의 반납과 동시에 환급한다.
- (11) 소비자의 미사용용기 매입 또는 반납시 가스잔량에 대하여는 판매사업자가 충전소 판매

고시가격으로 매입한다.

- (12) 소비자가 용기보증금 증서를 보관중에 분실한 경우 소비자의 분실신고로써 분실사실이 충분히 확인되면 용기보증금 증서를 재발행한다.
- (13) 용기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해 충전소와 용기제조업체간에 직거래가 조기 정착되도록 한다.
- (14) 이사를 가고 오는 소비자들간에 용기 및 용기보증금 증서가 가급적 양도·양수 되도록 유도 한다.

### 3. 기타사항

- (1) 시도는 同 지침에 의거 관내 충전업체와 협의하여 월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2) 시도는 반상회등을 통하여 용기보증금 제도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관련업체는 용기보증금증서 교부시 홍보자료를 첨부,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토록 한다. ◆

## □유가전망□

### BP유가전망

#### 수년내로 유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

BP社는 연례 세계 에너지 보고서에서 생산비용의 상승과 대체에너지 개발의 한계 및 과잉 생산의 감소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수년 내로 유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제1,2차 석유회기 때와 같은 유가 폭등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 산유국들은 생산능력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이 보고서는 1990년의 총에너지수요가 경기침체 및 걸프 위기로 인한 유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단지 0.4%증가에 그친 반면 총 산유량은 이라크 및 쿠웨이트의 생산 감축분 보충을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증산으로 인해 전년대비 86만b/d증가한 6,320만b/d(230.8억배럴)수준이었다고 同보고서가 밝혔다.

1990년의 에너지 수요의 경우는 지역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EC 회원국들의 수요가 전년 대비 0.3%증가에 그친 반면, 日本은 3.7%, 오스트레일리아는 2.7%증가하였다. 세계에너지수요중 24.6%의 비중을 차지하는 美國의 경우는 '89년 1.7% 증가에서 '90년 0.2% 증가로 수요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소련과 중부 유럽지역의 소비가 정치 경제적 대변혁으로 인해 4.5% 감소한 반면 아시아지역의 경우는 4.8%가 증가 하였다.